



# 【검토보고서】

2017. 12. 19 (화)  
제 287 회 정례회

##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**양주시의회**  
Yangju City Council

【전문위원 최상열】

#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기획예산담당관)
- 제출일 : 2017년 11월 6일

### 2. 제안이유

-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이율 및 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현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정함(안 제19조)
- 나.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21조)
- 다. 순화된 법률용어 반영 및 용어정리

### 4. 기타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2018년도 4,480,671천원 조성 예정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예고기간 : 2017. 11. 13. ~ 2017. 11. 20. (7일간)
   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부서협의
    - 협의기간 : 2017. 11. 06 ~ 11. 07(2일간)
    - 비용추계 : 원안동의
    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 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  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도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# ※ 관계법령 및 조례

#####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**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**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**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**
- ③ **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**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# -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(기금의 존속기간)

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**의회**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### 나. 개정 내용

#### 1)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19조)

- 현행 양주시의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을 5년 연장함.

-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기금의 존속기간)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<u>2017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 다만,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.	제19조(기금의 존속기간)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2) 조례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(안 제2조, 안 제20조, 안 제21조)
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함.

※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 1.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 <u>이라 함은</u>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 2. “여유자금” <u>이라 함은</u> 회계 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 다음 각 호와 --.</u> 1. -----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2.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

자금을 말한다.

3. “금고”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.

4. 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부서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.

5. “총괄기금관리관”이라 함은 총괄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부서의 장을 말한다.

제20조(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) 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3. -----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4. -----이란-----  
-----  
-----.

5. -----이란-----  
-----  
-----.

제20조(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통합관리기금운용관-----  
-----.

<삭 제>

#### 다. 종합검토 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기금의 존치 타당성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실효성 없는 기금의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으로

- 현재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은 4개 기금의 여유자금 약 45억원을 예탁 받아 운용 중(일반회계에 용자 / 연이율 3.0%)이며, 2018 년도에도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있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**-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현황**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금명	예탁금(통합관리기금)			비고
	2017 년도말	2018 년도말	증감	
합계	4,493	4,115	△150	
체육진흥기금	2,700	2,850	150	
식품진흥기금	78	78	0	
노인복지기금	1,187	1,187	0	
주민지원기금	300	0	△300	

**- '18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**

(단위 : 천원)

2017년말 현재액	2017년도 조성계획			2018년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4,623,065	287,787	430,181	△142,394	4,480,671

**- '18년도 자금 운용 계획**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지출 계획	
항목	금액	항목	금액
계	717,968	계	717,968
공공예금이자수입	137,787	재무활동	430,181
예수금	150,000		
예탁금이자수입	137,787		
예치금회수	130,181	예치금	287,787